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1호 2015. 10. 15. (목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4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은행지역 행복택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하동군 규칙 제1135호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 5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7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0차)..... 6
- 하동군 고시 제2015-74호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8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834호 하동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
- 하동군 공고 제2015-839호 하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1
- 하동군 공고 제2015-846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8
- 하동군 공고 제2015-849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1
- 하동군 공고 제2015-879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78
- 하동군 공고 제2015-885호 하동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5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41 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34호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읍면	리	마을	비고(세부지역)
하동읍	흥룡리	먹점마을	밤골
	두곡리	서제마을	
	두곡리	두곡마을	
약양면	미점리	미동마을	
	신흥리	하신흥마을	
	신흥리	상신흥마을	
	매계리	매계마을	
적량면	매계리	노전마을	
	관 리	관동마을	
횡천면	관 리	울곡마을	윗전대
	전대리	전대마을	
	애치리	애치마을	
	애치리	온동마을	
고전면	학 리	개인마을	
	범아리	매자마을	
금남면	성평리	신덕마을	진구지
	대치리	대치마을	
	진정리	금오마을	
금성면	계천리	계항마을	
진교면	궁항리	객길마을	
	고룡리	남양마을	
양보면	송원리	화포마을	
	장암리	우성마을	
청암면	지례리	가락마을	
	중이리	심답마을	
옥종면	월횡리	고암마을	윗고암
	병천리	가덕마을	산성
	법대리	법대마을	외골
	대곡리	동곡마을	
	대곡리	한계마을	
	회신리	양지마을	내회신

※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승강장(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1km이상으로서 주변마을, 도로, 주민불편 등 제반여건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41 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별표1]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제3조 관련)			
	계	28		계	31	
읍면	리	마을	읍면	리	마을	
하동	흥룡리	먹점	하동	흥룡리	먹점	
	두곡리	서제		두곡리	서제	
	두곡리	두곡(밤골)		두곡리	두곡(밤골)	
악양	신흥리	하신흥	악양	미점리	미동	
	신흥리	상신흥		신흥리	하신흥	
	매계리	매계		신흥리	상신흥	
적량	관 리	관동	적량	매계리	매계	
	관 리	울곡		매계리	노전	
횡천	전대리	전대(윗전대)	적량	관 리	관동	
	애치리	애치		적량	관 리	울곡
	애치리	온동	횡천		전대리	전대(윗전대)
	학 리	개인		애치리	애치	
고전	범아리	매자	고전	애치리	온동	
	성평리	신덕		학 리	개인	
금남	대치리	대치(진구지)	고전	범아리	매자	
	진정리	금오		성평리	신덕	
	계천리	계항		대치리	대치(진구지)	
금성	궁항리	객길	금남	진정리	금오	
진교	고룡리	남양	금성	계천리	계항	
	송원리	화포		금성	궁항리	객길
양보	장암리	우성	진교	고룡리	남양	
	지례리	가락		송원리	화포	
청암	중이리	심답	양보	장암리	우성	
옥종	월횡리	고암(윗고암)	청암	지례리	가락	
	병천리	가덕(산성)		중이리	심답	
	법대리	법대(외골)		옥종	월횡리	고암(윗고암)
	대곡리	동곡			병천리	가덕(산성)
	대곡리	한계			법대리	법대(외골)
			대곡리	동곡		
			대곡리	한계		
			회신리	양지(내회신)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1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35호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0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2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송림길 51-18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9.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7) 제 441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산99-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송림길 51-18	20150924	20070618	관곡리에 위치한 송림 마을명을 관곡송림길이라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0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길 21-4	20150924	20070618	하동공원이 위치하는 길임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500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대밭땀길 30-19	20150924	20070618	대밭이질어 대밭땀이라고 불리워져 대밭땀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917-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내길 29-10	20150924	20080402	못안이라는 순수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지내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통정리 453-14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구청길 155	20150924	20080402	구청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146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530-9	20150924	2009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883-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불무안길 26-50	20150924	20090302	불무라는 자연마을명에 지형특성을 합성하여 불무 안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59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60	20150924	2009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2015년 6월 1일
- 공시대상 : 하동읍 읍내리 101-5번지 외 284호
- 공시사항 : 개별주택가격(주택과 부속토지의 총액)
- 공시방법 :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군홈페이지 게재

2.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5년 9월 30일 ~ 10월 30일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서면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 인터넷 : 군 홈페이지(토지건축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55)880-2299)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5-834호

하동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정 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 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 및 개정 이유

- 상위법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 간 체계성 정립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증진을 도모

하 동 군 공 보

(10) 제 441 호

3. 주요내용

-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상위법령에 맞게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으로 우선계약 적용대상을 확대
-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
-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제정)
⇒ 장애인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 법령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증진을 도모

4. 의견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0월 13일까지 하동군(주민복지과 ☎880-2213, FAX 880-2039, lyj1019@korea.kr)에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3.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정안
4.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 동 군 공 보

(12) 제 441 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를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노인복지법」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 을 “뜻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조의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시설”이라 함은”을 ““공공시설”이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계약하고자”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로 한다.

[별표]와 [별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u>하동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노인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 할 때에는 군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한부모가족·노인(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을 말한다.</p>	<p>제명 “<u>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노인복지법」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에 따라----허가 또는 위탁 -----장애인 등이 ----- -----.</p> <p>제2조(정의) ----- -뜻은 -----.</p> <p>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p>

하 동 군 공 보

(14) 제 441 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2.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군의 회·그 소속기관(이하 "군 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군 등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u>계약하고자</u>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p>	<p>2. <u>"공공시설"이란</u> ----- ----- -----.</p> <p>제3조(적용범위) ----- ----- <u>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u> ----- ----- -----.</p>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제6조 관련)

순위 구분	1 순위	2 순위	3순위
2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등급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다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라목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서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441 호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글		세대주와 의 관계			
		한자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주 소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 청 대 상	<input type="checkbox"/> 만20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 상	비 과 세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대 상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input type="checkbox"/> 만65세 이상 노인						
	<input type="checkbox"/> 국가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독립유공자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가 족 사 항	세대주와 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천원)	비고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증명서 등) 1부. 끝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를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생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 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u></p> <p>③ <u>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u></p>	<p>제5조(위탁운영) ① -----위하여 <u>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u>-----</p> <p>-----.</p> <p>③ <u>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u></p>
<p>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④ 생략</p> <p>⑤ <u>수탁자는 시설물 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u></p> <p>⑥ 생략</p>	<p>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p> <p>-----<u>받아야 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기관”이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하동군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하동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이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개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 위탁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그 밖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위탁)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22) 제 441 호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탁기관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2. 장애인복지시설 재위탁 기관 선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사회계획의 전문성, 재정능력, 지역사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의 목적 및 위탁기간
3. 위탁대상시설(사업) 및 위탁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 및 고용승계
6. 계약의 해지 및 지도감독
7.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① 위탁기관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학교,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 감사) 위탁기관은 위탁운영 상황을 년 2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별지의 서식으로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 위탁기관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기준점수에 준하여 위탁취소, 공개모집,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재위탁 여부 등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준점수, 범례 >

기준점수	위탁여부
0점 ~ 69점	위탁취소
70점 ~ 80점	공개모집 응모 자격부여
81점 ~ 100점	재위탁(계약 연장)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공개모집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기 수탁자는 재심의를 참여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24) 제 441 호

③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 문제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고 우수하게(평가결과 81점 이상) 운영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지 서식]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수탁(연장) 신청서

법 인 현 황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원수	명
	주요사업 내 용				
	재산액	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천원	
	연간예산 (단위:천원)	계	운영체 부담	정부지원	기타

위탁 신청동기
(취지)

특이사항
(현재 운영중인 시설이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설립 인가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정관 사본 각 1부
2.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3. 법인 보유자산 및 부채상황 증빙자료
4. 법인의 장애인복지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센터장 관련서류
-이력서 및 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장애인업무 경력증명서
6. 최근 3년이내 행정기관, 법인 감사 등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등 기타 필요한 서류
7. 수탁시설 사업운영 계획

[별표 1]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7조제2항 관련)

구 성	내 용
<p>1. 수탁신청 기관에 관한 일반적 사항</p>	<p>1) 법인 유형, 조직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p>
<p>2.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p>	
<p>3. 시설운영 계획</p>	<p>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p> <p>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p> <p>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책총방안</p>
<p>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p>	<p>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공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p>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제7조제3항 관련)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 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30점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책총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50점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20점

하 동 군 공 보

(28) 제 441 호

[별표 3]

재위탁 평가 기준 및 배점(제15조 관련)

평가영역	평 가 문 항	배 점
조직 및 관리	1) 법인의 설립취지와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5
	2) 운영위 / 자문위 구성의 절적성과 운영규정의 시행 여부	5
	3) 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의 정도	3
	4) 시설배치 및 장비관리상태의 적절성	3
인력 및 재정관리	1) 인력확보 및 운영상태의 적절성	3
	2) 시설장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3
	3) 법인과 시설의 채용조달 능력	5
	4) 재정의 구성 및 관리상태	5
	5) 민간채용 확보의 능력 및 관리상태	5
프로그램	1) 지역주민 욕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 정도	5
	2)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의 전문성 정도	10
	3) 만족도 정도	5
	4) 저소득층 대상사업과 지역특성 사업의 실적	5
지역사회 관계	1) 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의 정도	5
	2) 지역사회 조직 활동	3
	3) 기관 홍보의 실적과 질적 수준	5
	4) 자원봉사자 관리의 실적	5
위탁 (재위탁) 조건이행	1) 위탁(재위탁) 조건 이행 정도	5
	2) 지도 점검시 지적사항 개선 정도	5
	3) 위탁 기간 중 수범실적	5
	4) 고용승계	5

※ 매우 우수 (높은 점수)

관 계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단체”란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체육
2. 교육·문화
3. 직업·경제
4. 사회참여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매년 수립하며, 제4조의 하동군 장애인 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축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이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임기) 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하동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제12조(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및 관리
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
3. 거주시설 종사자 야근수당 지원
4. 시설 종사자 수당 보조
5. 기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제16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2. 장애인 사회참여 및 체육·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4. 기타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5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17조(자립생활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활동보조인의 파견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 지원
3.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4.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교육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6.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7.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18조(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르며,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활동제공인력 등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공인력
2.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3.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 참여 도우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사자

제6장 장애인 가족지원

제20조(장애인가족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지원체계의 연구와 구축
2. 장애인가족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사항
5.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은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장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

제22조(복지지원의 내용)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활동보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시설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제12조 관련)

시설유형	시설명
장애인 생활시설	섬진강사랑의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하동군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동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하동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하동군 수화통역센터

【별표 2】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세부보조사업(제22조 관련)

지원사업 유형	사 업 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물리치료 및 체력단련실 유지관리
장애인 생활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사랑나눔미 빨래방운영 · 사랑나눔미 빨래방 기기구입 ·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
장애인 사회활동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 · 이동목욕차량 운영 ·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 ·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839호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규칙
2. 제안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의 반영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규칙 제명 개정(제명, 안 제1조)
 - 「하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 「하동군세 기본 조례」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 세입 마감일 개정(안 제25조 제2항)
 -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 → 다음해 2월 10일까지
 - 결손처분 시 체납자에 대한 행방 및 재산조사 제외되는 기준 개정(안 제89조 제4항, 제90조 제3항)
 - 체납액 10만원 미만 → 체납액 30만원 미만
 - 행방 또는 재산조사 → 재산조사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개정(안 별지 제72호 서식)
 - 지방세가 00억원 이상 →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

하 동 군 공 보

(42) 제 441 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무과, 전화880-2272, FAX 880-227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하동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을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세 기본 조례」” 를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10만원” 을 “30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10만원” 을 “30만원”으로 “행방 또는 재산조사” 를 “재산조사”로 한다.

별지제72호 서식의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중 “지방세가 00억원 이상인” 을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하동군 군세 기본조례」----- ----- -----,</p>
<p>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납세자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5. ~ 11. (생략)</p>	<p>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 5. ~ 11. (현행과 같음)</p>
<p>제25조(세입마감)① (생략) ② 매 월의 징수부는 다음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25조(세입마감)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③ (현황과 같음)</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2자의 행방 등을 조사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89조(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30만원 ----- ----- ----- ----- ----- ----- -----
제90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군세가 10만원(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미만인 경우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90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30만원 ----- ----- ----- 재산조사 ----- ----- ----- -----

하동군 공고 제2015-846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입법예고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 규정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일제 정비하여
 - 법령의 취지와 조문에 맞게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등 을 개정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제3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320, FAX 880-215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신·구조문대비표

(48) 제 441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①·② (생략)</p> <p>③ <u>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p>	<p>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 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p>

하동군 공고 제2015-849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요액을 정비하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지적, 유선 및 도선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제7조 1항)

하 동 군 공 보

(52) 제 441 호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과 맞는 수수료 범위 설정(별표 1)
 - 수수료가 표준범위를 벗어난 경우 표준수수료의 $\pm 50\%$ 범위내로 정비
 - . 안경업 개설등록 20,000원 → 10,000원
 - . 공연장 등록신청 2,000원 → 10,000원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2)
 - 문서 등 열람 수수료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
 - 전자파일의 복제수수료 기준을 ‘장’에서 ‘MB’변경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무과, 전화 880-2292, FAX 880-227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허가”를 “인가·허가”로,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 에”를 “등에”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중 “증명 등”을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무”를 “공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구”를 “신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청구한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준	요액(원)	비 고	
(증 명)				
1. <삭제 2003. 5.19 조 1649>				
2.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재직(경력·퇴직) 증명	1통	500	지적관계제외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		
(4) 의료기관·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500		
(5) 공부의 등·초본교부				
○ 대장문서	1통	300		
○ 토지도면	1통	300		
○ 건물도면	1통	300		
(6) 공부열람				
○ <삭제>				
○ 외국인 등록표 열람	1매	100		
○ 환지에정지 열람	1매	100		
○ 체비지(매각) 사실 열람	매당	100		
(7)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500		
(2)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500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500		
(4)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500		
(5)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500		
(6)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500		

하 동 군 공 보

(56) 제 441 호

구 분	기준	요액(원)	비 고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삭제>			
(3) 세목별 과세 증명	1통	800	
(4) 징수유예 증명	1통	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 증명	1통	500	
(2)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500	
(3) <삭제 2003. 1. 9 조1642>			
6. <삭제 2004. 2. 26 조1678>			
(1) <삭제 2004. 2. 26 조1678>			
(2) <삭제 2004. 2. 26 조1678>			
7. <삭제 2004. 2. 26 조1678>			
(1) <삭제 2004. 2. 26 조1678>			
(2) <삭제 2004. 2. 26 조1678>			
(3) <삭제 2004. 2. 26 조1678>			
(4) <삭제 2004. 2. 26 조1678>			
(5) <삭제 2004. 2. 26 조1678>			
(6) <삭제 2004. 2. 26 조1678>			
(7) <삭제 2004. 2. 26 조1678>			
(8) <삭제 2004. 2. 26 조1678>			

하 동 군 공 보

(57) 제 441 호

구 분	기준	요액(원)	비 고
8.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2) <삭제 2006.3.8 조1744>			
(3)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1주택	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500	
(2) 공유재산의 대부	1통	5,000	
(3) 공유재산의 계속대부	1통	3,000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컬러발급의 경우에는 1,500)	
2. 건설관계			
(1) <삭제>			
(2)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	
(3)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청구	1건	600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	
(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	
(6)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7)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	1건	1,000	
(8) 소하천 공사시행 (소하천 점용, 사용) 기간연장 신청	1건	1,000	
(9) 건설기계 저당등록 말소 신청	1건	1,000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1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12) 하천(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1건	1,000	
(13) 하천(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1건	500	
(14)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15)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3. 보건·사회·위생관계			
(1)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1건	20,000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3)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	1건	100,000	

하 동 군 공 보

(58) 제 441 호

구 분	기준	요액(원)	비 고
(4)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1건	40,000	
(5)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1건	3,000	
(6) <삭제 2003. 1. 9 조1642>			
(7) <삭제 2003. 1. 9 조1642>			
(8) <삭제 2003. 1. 9 조1642>			
(9) <삭제 2003. 1. 9 조1642>			
(10) 의례식장 등 명칭 변경신고	1건	500	
(11)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	
(12)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1,500	
(13)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	
(14) <삭제 2003. 1. 9 조1642>			
(15) <삭제 2003. 1. 9 조1642>			
(16) <삭제 2003. 1. 9 조1642>			
(17) 휴양 콘도미니엄업 신규 영업신고	1건	70,000	
(18) 휴양 콘도미니엄업 변경 영업신고	1건	35,000	
(19) <삭제 2003. 1. 9 조1642>			
(20) <삭제 2003. 1. 9 조1642>			
(21) <삭제 2003. 1. 9 조1642>			
(22) <삭제 2003. 1. 9 조1642>			
(23) <삭제 2003. 1. 9 조1642>			
(24) <삭제 2003. 1. 9 조1642>			
(25) <삭제 2003. 1. 9 조1642>			
(26) <삭제 2003. 1. 9 조1642>			
(27) <삭제 2003. 1. 9 조1642>			
(28) <삭제 2003. 1. 9 조1642>			
(29) <삭제 2003. 1. 9 조1642>			
(30) <삭제 2003. 1. 9 조1642>			

하 동 군 공 보

(59) 제 441 호

구 분	기준	요액(원)	비 고
(31) <삭제 2003. 1. 9 조1642>			
(32) <삭제 2003. 1. 9 조1642>			
(33) <삭제 2003. 1. 9 조1642>			
(34) <삭제 2003. 1. 9 조1642>			
(35) 종합유원시설업 신규 영업신고	1건	40,000	
(36) 종합유원시설업 변경 영업신고	1건	20,000	
(37) <삭제 2003. 1. 9 조1642>			
(38) <삭제 2003. 1. 9 조1642>			
(39) <삭제 2003. 1. 9 조1642>			
(40) <삭제 2003. 1. 9 조1642>			
(41) <삭제 2003. 1. 9 조1642>			
(42) <삭제 2003. 1. 9 조1642>			
(43) <삭제 2003. 1. 9 조1642>			
(44) <삭제 2003. 1. 9 조1642>			
(45) <삭제 2003. 1. 9 조1642>			
(46) <삭제 2003. 1. 9 조1642>			
(47) <삭제 2003. 1. 9 조1642>			
(48) <삭제 2003. 1. 9 조1642>			
(49) <삭제 2003. 1. 9 조1642>			
(50) <삭제 2003. 1. 9 조1642>			
(51) <삭제 2003. 1. 9 조1642>			
(52) <삭제 2003. 1. 9 조1642>			
(53) 안경업소 개설(양도·양수)등록신청	1건	10,000	
(54)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주)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건	10,000	
(55)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	1건	40,000	
(56) 석유판매업등록(주유소)	1통	20,000	
(57) 석유판매업등록(석유대체연료주유소)	1통	20,000	

하 동 군 공 보

(60) 제 441 호

구	분	기준	요액(원)	비 고
(58)	석유판매업등록(용제판매소)	1통	10,000	
(59)	석유판매업등록(석유대체연료판매소)	1통	10,000	
(60)	석유판매업신고(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1통	10,000	
(6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영업용화물차등록)	1통	5,000	
(6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63)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	
(64)	치과 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양수신고 한정)	1건	10,000	
(6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양도·양수신고 한정)	1건	10,000	
(6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1건	20,000	
(67)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개설장소 이전)	1건	40,000	
(68)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40,000	
(69)	부대사업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	
(7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4.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자 등록신청	1건	10,000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2002. 9.24 조1627>			
(12)	<삭제 2002. 9.24 조1627>			
(13)	<삭제 2002. 9.24 조1627>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 유통·제공업의등록(신고)	1건	20,000	
(15)	<삭제>			
(16)	<삭제>			

하 동 군 공 보

(61) 제 441 호

구	분	기준	요액(원)	비 고	
(17)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변경등록(신고)	1건	5,000		
5.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 시험수수료	1건당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교부	1건당	2,000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 갱신1건당	4,000 2,000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4)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5)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6)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구경 40mm미만 40mm이상	1,000 2,000		
(8)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 40mm이상	2,000 4,000		
6. 회계관계					
(1)	<삭제 2006.3.8 조 1744>				
7.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신청				
	○ 법인	1건당	30,000		
	○ 공인중개사	1건당	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재교부 신청	1건당	800		
(3)	분사무소 설치신고(법인)	1건당	15,000		

하 동 군 공 보

(62) 제 441 호

구 분	기 준	요액(원)	비 고
8. 농수산관계			
(1) 근해어업허가 신청	1건	5,000	
(2) 어업면허신청	1건	5,000	
(3)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	1건	4,500	
(4) 어업권(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000	
(5) 어업권분할인가신청	1건	3,500	
(6) 어업권보상등의 청구	1건	2,000	
(7) 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	1건	4,000	
(8) 어업권원부열람,등초본 교부신청	1건	800	
(9) 어업권(지분)이전등록	1건	1,500	
(10) 면허우선순위결정신청	1건	1,000	
(11) 면허신청기간의연장신청	1건	1,000	
(12) 어업재개신고	1건	1,000	
(13) 수산동식물의포획·채포금지해제 허가신청	1건	3,000	
(14)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1,000	
(15) 어업면허증, 관리선지정 (어선사용승인)증재교부신청	1건	1,000	
(16) 어업권의보상등의청구	1건	600	
(17) 입어재결신청	1건	1,600	
(18) 어장구역등재결 신청	1건	1,600	
(19) 어업휴업신고	1건	1,000	
(20) 연안어업허가신청	1건	3,500	
(21)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	1건	4,000	
(22)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5,000	
(23) 유해어법의사용 허가신청	1건	2,500	
(24) 마을어장(협동양식어장)안의 낚시터, 체험어 장지정신청	1건	2,500	
(25) 어업허가유예 신청	1건	1,600	
(2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600	
(27)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변경신고	1건	1,600	
(28)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000	

하 동 군 공 보

(63) 제 441 호

구 분	기준	요 액(원)	비고
(29) 포획채취금지해제 허가신청	1건	3,000	
(30)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1건	4,000	
(31) 어업신고	1건	1,600	
(32) 내수면어업 면허	1건	5,000	
(33) 내수면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	1건	5,000	
(34) 내수면어업 허가	1건	4,000	
(3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500	
(36) 수산물가공업 등록	1건	2,000	
(37)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500	
(38) 어선등록	1건	3,000	
(39) 변경등록	1건	3,000	
(40)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1건	1,500	
(41) 어선개조(건조발주) 허가	1건	1,000	
(42)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43)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	
(44) 선적증서 재교부	1건	1,000	
(45)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3,000	
(46)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4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1건	1,600	
(48)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5,000	
(49) 육상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5,000	
(50) 육상 변경허가	1건	1,600	
(5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	
(53)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54)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55)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56)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	
(57)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9.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하 동 군 공 보

(64) 제 441 호

구 분	기준	요액(원)	비 고
(40)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	1건	1,500	
(41) 어선개조(건조발주) 허가	1건	1,000	
(42)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43)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000	
(44) 선적증서 재교부	1건	1,000	
(45) 낚시 어선업 신고	1건	3,000	
(46)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	
(47) 어획물운반업 등록변경	1건	1,600	
(48) 육상 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5,000	
(49) 육상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5,000	
(50) 육상 변경허가	1건	1,600	
9. 체육시설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별표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화: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하 동 군 공 보

(66) 제 441 호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1조(목적)</p> <p>-----</p> <p>--- <u>인허가</u>, -----</p> <p>-- <u>등(이하 " 각종 증명 " 이라 한다)에</u> -</p> <p>- <u>징수에 관하여</u> -----</p> <p>-----</p> <p>제2조(적용)</p> <p>----- <u>증명 등</u> -----</p> <p>-----</p> <p>제4조(기준)</p> <p>① (생략)</p> <p>② ----- <u>공무</u> -----</p> <p>-----</p> <p>③ -----</p> <p>----- <u>요구</u> -----</p> <p>-----</p>	<p>제1조(목적)</p> <p>-----</p> <p>--- <u>인가·허가</u>, -----</p> <p>-- <u>등에</u> -----</p> <p>--- <u>징수에</u> -----</p> <p>-----</p> <p>제2조(적용)</p> <p>----- <u>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u></p> <p><u>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u></p> <p><u>" 각종 증명 " 이라 한다)</u> -----</p> <p>-----</p> <p>-----</p> <p>제4조(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공부</u> -----</p> <p>-----</p> <p>③ -----</p> <p>----- <u>신청</u> -----</p> <p>-----</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p> <p>① -----</p> <p>----- <u>아니한다. 다만, 지적,</u></p> <p><u>유선 및 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u></p> <p><u>제외한다.</u></p> <p>1. ----- <u>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u></p> <p><u>생활보장</u> -----</p> <p>-----</p> <p>2. (생략)</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2. (생략)</p> <p><<u>신설</u>></p> <p>3. <u>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u></p> <p><u>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u></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p> <p>① -----</p> <p>----- <u>아니한다.</u></p> <p>1. ----- <u>제2조 제2호에 따른</u></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u></p> <p><u>청구한 때</u></p> <p>4. <u>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u></p> <p><u>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u></p>

하 동 군 공 보

(68) 제 441 호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현행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2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5) (생략)			
(6) 공부열람			
○ 제적부 열람	매당	4원	
(7) 생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2 건설관계			
(1) 시도개설허가	1건	700원	
(2)~(6) (생략)			
(7) 소하천 공사행(소하천 점용 시용) 허가	1건	5000원	
(8) 소하천 공사행(소하천 점용 시용) 기간연장	1건	3000원	
(9)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3 보건사회위생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30000원	
(3)~(5) (생략)			
(5) 인양업소 개설(노양주) 등록신청	1건	20000원	
(5)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2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40000원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2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5) (현행과 같음)			
(6) 공부열람			
<u><삭제></u>			
(7)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 확인 등)			
2 건설관계			
<u><삭제></u>			
(2)~(6) (현행과 같음)			
(7) 소하천 공사행(소하천 점용 시용) 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공사행(소하천 점용 시용) 기간연장	1건	1000원	
(9) (현행과 같음)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원	
(11) 소하천 점용 시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원	
(12) 하천공유수면 점용 시용 허가	1건	1000원	
(13) 하천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	1건	500원	
(14)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15)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원	
3 보건사회위생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1건	20000원	
(2)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3)~(5) (현행과 같음)			
(5) 인양업소 개설(노양주)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사항 변경 신고(개설 장소이전)	1건	40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56)(61) (생략) (62) 소음·진동 배화시설 설치 허가신고	1건	5000원		(56)(61) (현행과 같음) (62) 소음·진동 배화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원	
<신 설>				(64) 차과 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주신고 한청	1건	10000원	
<신 설>				(65)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양도·양주신고 한청	1건	10000원	
<신 설>				(6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1건	20000원	
<신 설>				(67)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신청개설장소 이전	1건	40000원	
<신 설>				(68) 부대사업 개설신고	1건	40000원	
<신 설>				(69) 부대사업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원	
<신 설>				(70) 소음·진동 배화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4 문화공보관계				4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2000원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300원		<삭제>			
(3)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원		<삭제>			
(4) 공연장 증축허가	1건	5000원		<삭제>			
(5)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200원		<삭제>			
(6) 공연장 관람료 신고	1건	500원		<삭제>			
(7)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7)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8)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허가	1건	5000원		<삭제>			
7 부동산 중개업 관계				7 부동산 중개업 관계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분사무소 설치신고법안	1건	20000원		(3) 분사무소 설치신고법안	1건	15000원	
8 농수산관계				8 농수산관계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아업권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원		(3) 아업권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아업권분할인가신청	1건	4000원		(5) 아업권분할인가신청	1건	3500원	
(6) 아업권의 보상등의 청구	1건	600원		(6) 아업권의 보상등의 청구	1건	2000원	
(7)(19) (생략)				(7)(19) (현행과 같음)			
(20) 연·아업허가신청	1건	4000원		(20) 연·아업허가신청	1건	3500원	
(21)(34) (생략)				(21)(34) (현행과 같음)			

하 동 군 공 보

(70) 제 441 호

신 · 구조문 대비표

(3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3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500원
(36~51) (생략)				(36~51) (현행과 같음)		
<신 설>				(52)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신 설>				(53) 관리선 사용정 및 어선 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신 설>				(54)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신 설>				(55)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원
<신 설>				(55)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신 설>				(57)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원

[별표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개정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1회 : 250원
도판·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이상 300원 · B4이하 250원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녹음 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녹화 테이프 (비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마다 3,0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영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편이 1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켤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3,0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출력물 : 1매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롤마다 1,0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사진·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시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60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본(종이 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분마다 5,000원 <p>※매체비용은 별도</p>

하 동 군 공 보

(72) 제 441 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개정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권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권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권(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권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권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권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권(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개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p>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p>※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 붙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5.2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3.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한 날 또는 법인이 합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 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76) 제 441 호

-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에게 유·도선사업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 갱신신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운항중단신고서를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1호, 2015.7.2]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64호, 2015.1.2]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총리령 제1105호, 2014.1] <p> <input type="checkbox"/> 조문 <input type="checkbox"/> 부칙 <input type="checkbox"/> 별표/서식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 본문 재개제이유 발표서식 연혁 3D비교 신규별비교 법령체계도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font-size: small;"> 원행주소복사 말령용어 화면내검색 PC 새창 인쇄 </div>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신청·신고 사항 </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영업구역 선박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운항 횟수) </td> </tr> <tr> <td colspan="2" style="padding: 5px;">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신청, []신고)합니다.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50px;"> 년 월 일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신고인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서명 또는 인)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수산부 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귀하 </td> </tr> </table>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20%; border-right: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x-small;">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font-size: x-small;">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허전함을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을 등 허가서 사본 1부 </td> <td style="width: 10%;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 수수료 없음 </td> </tr> <tr>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x-small;">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td> <td style="border-bottom: 1px solid black; font-size: x-small;">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 margin-top: 5px;">행정정보 공동이용 통의서</p>	신청·신고 사항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영업구역 선박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운항 횟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신청,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수산부 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허전함을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을 등 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신청·신고 사항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영업구역 선박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운항 횟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신청,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수산부 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허전함을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을 등 허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2010.1.29., 2015.7.24.>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설 장소의 이전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9.>

□ 기타

○ 단서조항 삭제 시군구(10개 지자체)

: 거제, 거창, 밀양, 의령, 창녕, 창원, 통영, 함안, 함양, 합천

○ 단서조항 유지 시군구(7개 지자체)

: 고성, 김해, 남해, 사천, 산청, 양산, 진주

하동군 공고 제2015 - 879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하 동 군 수

1. 제 목 :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5. 10. 13 ~ 10. 27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참조
5. 공고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교부 및 기타문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055-880-2565)

하 동 군 공 보

(79) 제 441 호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납부자번호	차량번호	금액	송달주소	반송사유
세양정보통신유	614-81-*****	경남81무2488	996,20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동 614번지 1호 토틸레콤주식회사(군청로57-9 박상규	수취인불명
정형자(황선명)	651027-*****	03라1963	9,050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40-1 6/3(황선명-김해시 고모로 82-이사)	이사
대한개발주식회사	613-81-*****	경남81무2997	864,240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363-5	수취인불명
㈜강남투어여행사	195011-*****	경남72바9739	801,87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110	이사
봉화건설유	613-81-*****	97나1366	24,790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177-1(97나1366)	이사
청수건설유	134211-*****	96우9786	488,410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177-1(3층)	이사
대흥건설유	614-81-*****	경남8디3614	606,610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211-8(고성 고성읍 성내리-방치)	이사
지산건설유	614-81-*****	경남81무2000	620,130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611-57	수취인불명
정호건설유	140111-*****	92로2379	133,850	하동군 하동을 향교길 27 영송빌라 602호	이사
㈜광화토건	610812-*****	경남47가6249	88,760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302-10번지	이사
하동건설유	614-81-*****	경남81무5155	355,400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232-2(7/1~	이사
㈜이베토	194711-*****	86조8652	45,500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237-8 이베토	이사
㈜효성건설	129812-*****	81디8355	23,180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177-1	수취인불명
㈜가람조경	194711-*****	경남47가4466	270,080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264(경남81무2813)	이사
동지산업개발유	194711-*****	81가7437	249,480	하동군 하동을 화심리 860-2(11/2~	이사
㈜하전전기	614-81-*****	경남71라1366	33,960	하동군 하동을 팔팔리 277번지	이사
동원산업유	614810-*****	경남7모1512	431,630	하동군 하동을 팔팔리 221-92	수취인불명
㈜강산전기	6138-*****	96무7128	56,26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150-1 3층	이사
농업회사법인하동할림유	194711-*****	97나1821	49,390	하동군 하동을 중앙로 101	이사
㈜누리	613-81-*****	97디6565	5,110	하동군 하동을 중앙로 114	이사
한농임예AK양진천)	614026-*****	경남8즈1543	363,200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로 40-4	이사
㈜현대베스트건설	194611-*****	95저520321	44,070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635-10	이사
㈜성민전력	613-81-*****	97머7015	64,37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217	이사
동양건설	411811-*****	97거2779	13,380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841-2번지 k13층	반송함
하동산업전기유	194711-*****	경남81무5649		하동군 하동을 하마길 2	이사

김성배	610805-*****	07머3511	459,390	하동군 하동을 설진강대로 2348-3	미거주
김영수	610105-*****	경남7모1357	27,190	하동군 하동을 산복2길 73	이사
김삼환	710125-*****	97거5202	17,790	하동군 하동을 중앙로 31-3	이사
장철호	700203-*****	17버1822	90,090	하동군 하동을 나루터길 10	이사
변영길	660201-*****	97거2969	72,190	경기 안성시 죽산면 관음당길 39-8 지에프@104-601	반송함
황경운	550813-*****	84디7916	94,55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157	이사
강승은	821020-*****	66가9778	87,100	하동군 하동을 군청로 185-15	이사
오진택	751203-*****	경남81무5068	40,980	하동군 하동을 배실길 28	수취인불명
정영수	580216-*****	경남80루3706	168,900	하동군 하동을 팔팔리 358-1	수취인불명
김영자	650310-*****	96무7187	105,490	하동군 하동을 부두길 47	수취인불명
이홍열	510423-*****	97디3943	113,520	충남 예산군 웅촌면 읍봉로 133(하동을 산복1길:수취인불명)	이사
박민호	560915-*****	48머1104	244,260	하동군 하동을 구통길 57(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 영신빌라(반송함))	수취인불명
손필명	680406-*****	19구6982	13,690	경기 포천시 포승읍 여송3길 9-5 302호	방치
김인석	371130-*****	83수3171	24,47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120-1	수취인불명
박은규	610125-*****	경남8즈1700	644,850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14번길 7	이사
안호용	710120-*****	32디9390	26,870	하동군 하동을 신기리 355-1 4/1	수취인불명
이정량	401210-*****	96무7374	896,56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71 대경솔림타운101-103(4대)하동을 중앙로70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최영석	730218-*****	09머5179	53,740	하동군 하동을 산복1길 20 대망파크맨션 1동506호	반송함
김세희	830126-*****	경남70도1260	351,770	하동군 하동을 동림길9-4(중앙로 70:수취인불명)	이사
권태현	731124-*****	66수8961	115,820	하동군 하동을 송림2길 5(14/1~	이사
최현문	641229-*****	경남81무4633	666,940	하동군 하동을 향교2길5-6(1/1~	이사
김성진	760124-*****	경남71라2590	13,920	하동군 하동을 중앙로53-1(고성군 고성읍-이사)	이사
황용길	691221-*****	80서9947	75,240	하동군 하동을 군청로 143	수취인불명
송철수	570322-*****	경남7느5057	13,070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1494-22 오룡빌라 304호	이사
김병채	540701-*****	96주2091	198,98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116(12/1~	이사

하 동 군 공 보

(80) 제 441 호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납부자번호	차량번호	금액	송달주소	반송사유
조현정	601127-*****	97나4573	24,700	진주시 돛골로106번길 11-2	이사
오성민	770206-*****	경남81나4879	456,950	하동군 하동을 비파리 611-53 출현로일멘션 나동107(목포사:이사,여수시: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창환	630116-*****	97거2257	252,120	하동군 하동을 송림3길 19-4(8/2~)	이사
하경남	730223-*****	84거3469	53,780	하동군 하동을 송림3길 8(10/1,10/2)	이사
허용도	570312-*****	경남34가5157	54,980	하동군 하동을 신기공항길 298-23	이사
신동혁	640628-*****	88마9906	11,190	하동군 하동을 굴다리1길 14	이사
정규철	700719-*****	21러2049	18,750	하동군 하동을 소재2길 3-6	주소불명
임균택	660124-*****	90고3635	45,780	하동군 하동을 부용길 8-13	수취인불명
이계규	570603-*****	82마5370	24,610	하동군 하동을 항교1길 23	이사
최연국	590801-*****	10마4857	15,650	하동군 하동을 하마길 56-4	이사
강영민	630601-*****	85노3794	130,110	하동군 하동을 산복1길 20 대망파크맨션 가동503호	방치
황용순	681218-*****	17나5130	137,05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221번나길 118	수취인불명
부영미	580901-*****	경남1누3004	617,14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157(2/2~)	이사
이동상	511028-*****	10도8843	186,560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224-5 대개공	수취인불명
양성백	701206-*****	97거2019	108,330	하동군 하동을 광평리 428번지 대경송림타운 102-808(10/1~12/2:5건)	방치
한동희	720515-*****	36구4082	9,910	전북 군산시 동아로 49(원불 증 호수환인)	주소불명
이명기	640301-*****	31도7533	6,370	하동군 하동을 청년회관길 19	이사
이광문	570702-*****	65노4409	31,680	하동군 하동을 구동길 33-5	수취인불명
최영환	550305-*****	79버7007	576,460	하동군 하동을 설진강대로 2627 (시설물 :미리내호텔)	이사
김영환	650710-*****	경남70고1869	319,810	하동군 하동을 설진강대로 2808-26	이사
김성환	740905-*****	52거9693	35,36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71 대경송림타운102-102	방치
박영수외1(박재현)	570919-*****	80다1057	25,230	하동군 하동을 연화길 16-3	수취인불명
심치우	670422-*****	91 구6211	31,260	하동군 하동을 중앙로 64	이사
김경민	670617-*****	48마1825	10,150	하동군 하동을 동교2길 11(11/1,11/2)	수취인불명
김범섭	610625-*****	50고8130	112,420	하동군 하동을 오물정길 4-1	이사

박지환	540311-*****	97대6584	48,190	하동군 하동을 설진강대로 2576-10	미거주
조우준	740914-*****	경남81무4623	60,51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243-2	이사
김광철	640315-*****	31나6021	68,440	하동군 하동을 중서1길 6	이사
이을길	520420-*****	97나2550	57,690	하동군 하동을 나루터길 15-16	이사
이성철	720221-*****	61러6164	73,600	하동군 하동을 하마길 62-13	주소불명
김구태	690228-*****	90러2558	189,230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4길 26	이사
황경규	710208-*****	경남81무5737	123,720	하동군 하동을 산복2길 77-1 연화연립 102호	방치
이은아	711010-*****	경남81무1760	524,830	하동군 경서대로 243-5	수취인불명
김현중	631009-*****	95고2374	10,500	하동군 하동을 나루터길 15-16	이사
김병재	540701-*****	96주2091	158,79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116(12/1~)	수취인불명
송중찬	700126-*****	95루8970	399,980	하동군 하동을 나루터길 19(6/2~14/1:17건)	이사
정경환	540602-*****	경남81무5799	346,710	하동군 하동을 산복1길 17-23	이사
배재성	670508-*****	84다8462	37,670	하동군 하동을 화심리 옐로우캡	이사
김영웅	610506-*****	95서1043	213,340	하동군 하동을 서동길 18	이사
서보영	600228-*****	경남5가8354	714,570	하동군 하동을 소재1길 3	수취인불명
정두현	491213-*****	경남81무4869	29,450	하동군 하동을 중앙로 22(시설물 합동전자)	수취인불명
전경옥	560517-*****	경남8즈1226	678,020	하동군 하동을 산복1길 19-1	이사
정상건	740425-*****	68부5483	435,430	하동군 적량면 공철로 11 (68부5483)(창원시 성산구용지로70 성원오피스텔 628호)방치	방치
박종상(0265-0001)	630310-*****	시집가는날(강산전기)	7,790	하동군 하동을 경서대로 150-1	이사
김연자(0130-0201)	제일안경외	제일안경	313,340	하동군 하동을 하마길 56-4	이사
정동민(0079-0001)	하동위패, 앞뜰살뜰	앞뜰살뜰	299,880	하동군 하동을 읍내리 320-1(부산동명로152번길:이사)	이사
이룡원(0253-0001)	쌈바	쌈바	104,250	하동군 하동을 시장1길 15-1	이사
김영훈(0198-0303)	430528-*****	남선떡방아	5,000	하동군 중앙로22	수취인불명
탁대성(0084-0001)	740223-*****	더페이스샵	105,250	하동군 하동을 중앙로 13 삼성의료원	수취인불명
김대형(0241-0001)	581021-*****	제우스당구장	60,060	하동군 하동을 시장1길 25	수취인불명

하 동 군 공 보

(81) 제 441 호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납부자번호	차량번호	금액	송달주소	반송사유
다사돌지킴이환경운동본부	0246-0001	다사돌지킴이환경운동본부	89,430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42	수취인불명
김미란(0266-0001)	720408-*****	나비엔	18,780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84	미사
임순삼(0051-0001)	골든벨	골든벨	77,750	하동군 하동읍 중앙길 8-1	수취인불명
오태영	570805-*****	경남7노1520	106,800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95 (경남7노1520,97나1 722) (2/2~	미사
구정현	740103-*****	경남82다4130	37,310	진주시 진주대로1143번길 8	방치
이경순	601111-*****	경남80구7907	69,290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813-15	수취인불명
서일준	810419-*****	15구9854	6,550	거제시 탑곡로4길 31	주소불명
김상기	470423-*****	80거4189	198,680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6-16 (12/1~	수취인불명
경제원	710520-*****	48011058	6,090	하동군 적량면 안성길 59-12	미사
오영남	750820-*****	경남81무5638	387,490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3-15	수취인불명
재단법인하동영신원	614820-*****	79부7690	21,820	하동군 적량면 동신리 산 102	수취인불명
이씨엘씨	613-85-*****	96무7089	652,520	하동군 적량면 동신리 1109번지 (04/2~	수취인불명
이덕구(0025-0001)	621029-*****	영신마을회관	7,710	하동군 적량면 황덕길 137-6	수취인불명
최소열	330802-*****	경남81무3683	23,130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630번지	미사
하진선	590110-*****	경남47나2326	686,850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40-77	방치
김중순	650912-*****	94노2243	29,060	서울 노원구 상계동 757번지 한양아파트상가 101호	미사
최영규	660912-*****	65노3529	22,630	하동군 청암면 함박길 9-4	미사
씨농협샘물	614810-*****	경남71라1642	506,010	하동군 청암면 철학로 2219-85	미사
정대성	570818-*****	51노1306	67,310	전남 해남군 북일면 원동길 13	미사
김석진	640328-*****	97다1049	16,370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83	미사
이경권	750507-*****	49거6658	19,740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129-5	수취인불명
이삼수	541202-*****	96우5557	198,470	하동군 청암면 철학로 2219-80	미사
임준호	730417-*****	91대2500	193,560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97-11	미사
최성암	590610-*****	94라6858,95서7621	186,020	하동군 금성면 명덕길8 (12/1~	수취인불명
김동철	600402-*****	24노2489	33,880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34-1	미사

강통일	600107-*****	96무7566	180,620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71 (07/01~	미사
정상동	760219-*****	97부5118	139,540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485 해양파크빌 104-201호	미사
강부석	610815-*****	17라2089	37,960	하동군 금성면 경제산업로 332-23	미사
김진봉	610620-*****	경남81무4489	384,750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184 4/6 (1/1~	미사
김형곤	590215-*****	경남1노1649	150,390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90-16	미사
최종익	600702-*****	경남82거1674	24,610	하동군 금성면 황도길 38-6 (광양시 금호로 41 백합@15-303:방치)	미사
김경규	581010-*****	85조3748	72,950	하동군 금성면 김목길 84	수취인불명
정상수	660311-*****	경남47나2300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604-3	미사
박용길	511001-*****	96루3338	9,530	하동군 금성면 고포큰골길 39-10	미사
백대성	571116-*****	경남80나8989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27-8	수취인불명
이남식	690201-*****	05로5841	120,210	하동군 금성면 나팔중앙길 40-2 (김해 인제로 14-1 101호:수취인불명)	미사
정찬수	800912-*****	83투1771	54,390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14-5	수취인불명
정재문	560306-*****	84서7109	3,440	하동군 금성면 금성로 25	미사
이인승	600305-*****	경남7러1941	142,960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485 해양파크빌@105-406	미사
김상훈	681027-*****	경남46가8465	39,610	하동군 금성면 내도청도길 88-43	수취인불명
강재희	780514-*****	16거2860	18,750	하동군 금성면 연막중앙길 7-1	수취인불명
강대선	650817-*****	90로6143	4,370	하동군 금성면 서근목길 7	미사
하정식	700410-*****	경남82너3889	19,480	김해 생림면 장재로429번길 78-27	미사
남재동	640422-*****	97거2531	798,240	하동군 금성면 명덕뒷담길11(가덕리 406-1번지)	미사
씨케이통운	613-38-*****	경남99바9142외20건	1,059,080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08번지	수취인불명
씨와이지개발	200111-*****	82부6435	118,770	하동군 금성면 고포리 19-2 2층 (13/1~	미사
(유)해동기업	416-81-*****	경남71라1576	528,620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675번지 (7/1~	미사
조양건설씨	614-81-*****	경남81무1543	541,450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52-11	수취인불명
씨원아름	194711-*****	96부1091	405,070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67 (13/02~	미사
조병선(0007-0001)	451202-*****	하안성모텔	12,160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744	미사

하 동 군 공 보

(82) 제 441 호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납부자번호	차량번호	금액	송달주소	반송사유
김경희(0044-0001)	670215-*****	남부식당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77번지	이사
김중현(신경자)	리버사이트	(0039-0001)	109,560	하동군 금성면 산업로 510-1	이사
박찬준	491128-*****	97거2143	4,860	하동군 칠천면 구학길 89(13/2)	수취인불명
박종근	730824-*****	70누1231	144,200	하동군 칠천면 문화2길 21-1	이사
김승태	580310-*****	경남7모3725	180,540	하동군 칠천면 상철길 9	이사
김인순	630612-*****	51고3984	17,950	하동군 칠천면 활보길 12-28	수취인불명
김호근	640527-*****	32리7339	18,100	하동군 칠천면 경서대로 963-14	이사
김현태	600826-*****	97거4567	35,240	하동군 칠천면 경서대로 963-47	이사
박동홍	400602-*****	경남80루8229	24,610	하동군 칠천면 돌고지로 109-12	이사
한창호	561020-*****	89리2268	16,230	하동군 칠천면 구학길 12-41	이사
최승호	630715-*****	93거2823	50,350	하동군 칠천면 전대1길 117	수취인불명
김형준	500411-*****	80무9222	63,890	하동군 칠천면 마치길 13	수취인불명
박동목	561212-*****	95보4034	234,300	하동군 칠천면 문화1길16(10/2~	이사
삼천포화물	619-81-*****	경남810아4843외	5,173,370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도 191-1	이사
주차종	610720-*****	97가1150	67,380	하동군 악양면 상중대1길 12-21 (서천 장항을 장마로73번길 8-3(이사)	수취인불명
정천수	560920-*****	경남1묘2831	336,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1369번지 정우빌라c동302호(악양삼진강대로	방치
전차조	401220-*****	79서5001	23,440	하동군 악양면 팔촌길 22-6	수취인불명
이철주	580616-*****	06다2138	19,580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40-1	수취인불명
강동길	781227-*****	94우7543	49,610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40-1	수취인불명
이헌채	700521-*****	35다6564	35,570	하동군 악양면 삼진강대로 3079-18	주소불명
유재무	710307-*****	96부1447	52,790	하동군 악양면 신송길 121-120	이사
김경훈	830528-*****	97나9312	39,200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로 93-6	수취인불명
김명곤	701126-*****	96무7777	25,230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360	이사
이효재	580729-*****	경남80루3810	122,810	하동군 악양면 신송길 18-18	이사
김영화	600318-*****	경남8즈1554	835,170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68	이사

신태성	521008-*****	경남7노7227	74,620	하동군 화계면 화개로 87(9/1~	수취인불명
홍경천	671208-*****	18마5449	99,910	하동군 화계면 쌍개로 4	수취인불명
김임곤	520409-*****	경남34거6616	48,040	하동군 옥중면 옥중중앙길 29-1	
강원곤	381127-*****	79버7394	22,540	하동군 화계면 임탑1길 31	이사
김동일	620925-*****	91나8531	27,560	전남 진도군 의신면 의신송정길 7	이사
백준기	681225-*****	96리1736	57,380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길 59	수취인불명
정호진	650109-*****	04부1486	23,440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길 59	이사
강호동	630215-*****	62오6154	42,180	하동군 화계면 쌍계사길 59	이사
한재성	671215-*****	02주4335	102,2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련로18번길 24	수취인불명
한재준	650103-*****	경남81리2085	405,880	경기도 파주시 혈릉면 선우물길 121	주소불명
박원섭	710525-*****	07조7656	28,350	하동군 화계면 쌍개로 456-3	수취인불명
농업회사법인요산당주식회사	194711-*****	84가6509	14,560	하동군 화계면 화개로 84	주소불명
㈜금우	194711-*****	97거2717	294,030	하동군 화계면 화개로 87(9/1~	이사
조흥주(0066-0001)	690715-*****	달마가든	37,960	하동군 화계면 삼진강대로 3494	이사
오영란	611110-*****	경남8오2595	19,300	하동군 옥중면 대곡리 217	수취인불명
김유수	550201-*****	경남7느2179	17,990	진주시 수곡면 옥수로 461-1	이사
정충식	770201-*****	경남80무1750	273,820	하동군 옥중면 북방우회길 40-28	수취인불명
정연두	691012-*****	경남34너9510	27,370	하동군 옥중면 한계길 146	수취인불명
ZHU GUIYUN	630109-*****	97다6125	46,050	하동군 옥중면 세종대실로 595	수취인불명
신홍철	540101-*****	경남80무4807	22,850	하동군 옥중면 병천리 317 7/1 (11/2)	이사
푸른영농조합법인	194771-*****	경남80무3271	73,500	진주시 명석면 판문로 70 조용덕 (경남82무3271)	이사
㈜풍성산업	613-81-*****	경남7리2594	350,440	하동군 옥중면 양구리 435-7 (6/1~	이사
㈜태화이앤씨	194711-*****	79버7668	394,680	하동군 옥중면 양구리 435-7(8/2~	이사
동남연와산업㈜	614-81-*****	경남7도4412	1,899,200	하동군 옥중면 양구리 산21번지 (3/1~	이사
㈜동명산업	614-81-*****	경남8코2847	456,230	하동군 옥중면 청룡리 53(5/2~	이사
부평건설㈜	613-81-*****	경남7느2532	379,260	하동군 옥중면 청룡리 215-5(6/2~	이사

하 동 군 공 보

(83) 제 441 호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납부자번호	차량번호	금액	송달주소	반송사유
㈜한강종합건설	311811-*****	97거5313	9,900	하동군 옥종면 세종대실로 567-23	이사
이국표	540923-*****	97나1585	62,380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로 799-53 (시망)	수취인부재
김민형	680227-*****	97나1657	11,510	하동군 옥종면 세종대실로 567	수취인불명
최재운	430620-*****	경남81무5853	31,810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532-18	이사
이강수	481014-*****	97리5116	22,050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398-10	이사
이인우	711017-*****	경남7모3106	233,920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09-3	수취인불명
성현국	670303-*****	경남39다8693	64,670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728 (10/1~11/1)	이사
탁권수	571126-*****	경남81다4703	44,440	하동군 양보면 서재길 174-13 (경남37다8922)	이사
김희준	590909-*****	경남80구2743	150,850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649-2 송죽자	수취인불명
안진근	510910-*****	경남81고1604	129,380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97 (11/1~)	이사
이동희	701215-*****	39모6769	38,870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280-3 (8/1) (사천읍 역사길 8)	수취인불명
박희갑	610118-*****	73조8575	157,230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515 (12/1~)	이사
강만화	570904-*****	96우1353	40,850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14번길 15	이사
허수연	910122-*****	90리3789	33,810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073-5	이사
경성식	630327-*****	경남7느5393	66,830	진주시 진주대로500번길 8-1	수취인불명
신정우	490608-*****	84라1844	20,890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406-1 (시망)	수취인부재
서경한	660215-*****	경남7느1300	1,414,590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88번지 (고전 전도 126번으로 주소변경) *경기, 고전다반송	이사(28건)
김광정	440820-*****	96루5093	39,720	하동군 고전면 신철길 7 (10/2,11/1)	이사
김민진	850415-*****	96부8623	93,340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41	이사
조재군	600301-*****	81가7484	116,310	하동군 고전면 매지신방길 32	이사
강석현	600508-*****	경남81무2608	85,700	하동군 고전면 철진길 32-5(경남81무2608) (11/2~)	이사
김기홍	381020-*****	48머1435	296,110	하동군 고전면 전도1길 39	수취인부재
김은주	810717-*****	61우1022	61,670	하동군 고전면 신철길 7	이사
김주식	691116-*****	경남81두4418	272,160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 (8/2~)	이사
조기홍	490824-*****	경남8즈1612	1,198,790	하동군 고전면 잔너리길 95-8 (01/01~)	이사

박금희	721003-*****	경남47나3950	373,560	하동군 고전면 백석길 13	이사
농업회사법인(주)대흥농부	194711-*****	47저6874	24,460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30	수취인불명
㈜신리전력	191111-*****	97나3192	14,000	하동군 고전면 날정길 1	이사
㈜부영	614-81-*****	경남6즈1106	964,840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329번지	이사
남양석유㈜	614810-*****	경남81다8002	31,380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498번지	이사
(유)하성건설	609-81-*****	경남81무6465	1,232,860	하동군 고전면 신철리 1147-9 (4/2~)	이사
주식회사세울테크	194711-*****	01두8978	27,490	하동군 진교면 경춘로 1272 (9/2,10/1)	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620921-*****	75머6009	144,160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467 11/2~	이사
하남축산영농조합	614-81-*****	경남81무1567	438,010	하동군 진교면 백현리 684-1 (5/2~ (진양로 323)	이사
㈜우리엔탈중공업	609812-*****	97리6126	235,630	하동군 진교면 신안길 2	이사
진웅건설㈜	127-81-*****	13부7437	32,84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24 (10/2~ 11/1)	이사
장성건설㈜	174811-*****	90소7357	8,360	하동군 진교면 민디리길 35	수취인불명
세명산업㈜	191111-*****	경남81무3851외	627,150	하동군 진교면 경춘로 1067	수취인불명
천왕영농조합법인	613815-*****	97디6576	239,080	하동군 진교면 구고속도로 504	이사
(유)두릉종합건설	194214-*****	경남81너9925	32,600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3번지 미진스위트빌상기동 402호	이사
㈜경남아스콘	613-81-*****	경남82가2611	1,242,410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377-1(달구지길 95-47)	이사
㈜매림	194711-*****	66무7773	37,880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197-17번지	이사
㈜케이티씨	613-81-*****	65디4143	75,370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257-5	이사
㈜삼화토건	311812-*****	97소4941	11,070	사천시 곤명면 곤명1로 100 일도건설	이사
합지사진교기업농업회사	614-81-*****	경남81무1675	590,910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1-175	이사
주식회사스페이스	194711-*****	82모3087	42,050	하동군 진교면 민디리안길 97 진교@103	수취인불명
㈜길따라, 한우리	613-81-*****	경남72바4408 외 57	4,398,050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210-1 (하동고속관광)	이사
김형진	690803-*****	경남81무2204	562,640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3 미진@ 104-1104	방치
박병도	600130-*****	경남80두7693:2	1,005,080	하동군 진교면 민디리길 39	수취인불명
권기경	700620-*****	48두6977	45,1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20-2 송촌빌라 10동102호	수취인불명

하 동 군 공 보

(84) 제 441 호

2015년 2기분 및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납부지번호	차량번호	금액	송달주소	반송사유
최규대	600425-*****	경남37가4662	146,810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101번길 15	이사
김동근	630103-*****	경남70다4410	28,430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16-2	이사
이호경	751213-*****	96가4872	8,430	하동군 진교면 상교개로 456-6	수취인불명
정옥순, 서현철	580217-*****	65다5834	250,780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57	이사
황봉학	600627-*****	경남81무2287	43,130	하동군 진교면 진안로 10-1 (31 무6457)	이사
박정삼	581115-*****	경남70리6220	374,780	하동군 진교면 들포길38 미진스위트빌103-1306 (9/2~	이사
김정태	620604-*****	경남47나1373	474,450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10 (04/2~	이사
전명동	670601-*****	84루8510	32,810	하동군 진교면 진교막곡길 1 402호	이사
전광복	600403-*****	55다4521	194,440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109-2 (10/2~	이사
김병균	651217-*****	09버8524	141,270	하동군 진교면 송내길 5	이사
조동식	690820-*****	97L2637	29,130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46	이사
홍종열	730712-*****	경남71마7244	24,610	하동군 진교면 철운길 206-3	수취인불명
김우식	520701-*****	79저1538	22,200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1101	이사
정종인(0004-0001)	백합다방	백합다방	416,450	하동군 진교면 진교중앙길 14-3	이사
전석순(00010001)	451006-*****	산정가요방외3개소	198,140	진주시 모덕로64번길 10	수취인불명
추병철(0032-0001)	정치과외1개소	정치과외1개소	89,780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2	이사
김진권	680314-*****	경남8으2366	1,278,87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0-2번지 노랑빌리302호 (1/1~	이사
김영주	791215-*****	95서8405	200,350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642-5	이사
박영기	550714-*****	경남81무6542	123,730	하동군 금남면 설진강대로 973-34	이사
정재훈	741219-*****	96저4386	17,080	하동군 금남면 종평해안길 245	이사
이기영	620814-*****	97서1400	148,860	하동군 금남면 동산길 48	이사
추경술	571027-*****	87조3760	15,540	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13	이사
정태열	640301-*****	경남81무1807	461,860	하동군 금남면 종평큰골목길 6	이사
김현철	610125-*****	97L3863	354,280	하동군 금남면 주교로 169-21 (97L1845)(9/2~	이사
노태기	581121-*****	경남6고1123	38,930	진주시 남강로935번길 6	이사
김점주	710216-*****	경남82가2149	126,920	하동군 금남면 경제산업로 58	이사
하중용	680209-*****	82저7224	538,950	김해시 외동 1247번지 2층 201호 (금남작은삼내갈:이사:6/1~	이사
서원호	631001-*****	경남81무5035	11,780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92-1번지 4/4 (10/1)	이사
김명환	890816-*****	97거2527	52,210	하동군 금남면 상곡길 10	수취인불명
황규민	510622-*****	84라1029	163,160	하동군 금남면 달구죽길 15	이사
김일선	630129-*****	95마5145	66,470	하동군 금남면 노랑해안길 6-2	이사
김정환	701108-*****	66버6494	72,660	하동군 금남면 종평해안길 245	이사
㈜케이엔	194711-*****	94노7867	6,420	하동군 금남면 설진강대로 867	이사
㈜하이랜드	613-81-*****	경남47나2857	913,960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16 (대왕골길 20 :3/2~	이사
㈜미래산업개발	613-81-*****	97거2304	15,020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10/2,11/1)	이사
㈜석진산업	194711-*****	경남34너2842	265,920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8/2 (설진강대로 972 :11/1~	이사
㈜한우리여행사	194711-*****	50다4047	113,030	하동군 금남면 설진강대로 972	수취인불명
㈜지구환경	614-81-*****	경남7도7966	22,730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16번지(11/2)	수취인불명
우주통상㈜	141211-*****	경남99바9193	1,353,380	하동군 금남면 설진강대로 931	이사
하남도건㈜	613-85-*****	경남80루5951	583,860	하동군 금남면 노랑리 208 (경충로 :9/2~	이사
㈜신한중공업지점	201611-*****	86조8793	133,450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32번지 (12/1~	이사
은회준(0058-0001)	491216-*****	전도당구장	21,380	하동군 금남면 설진강대로 972	이사
표봉섭(0067-0001)	681025-*****	하몽온천모델	17,420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461-7	이사
김홍규(0061-0001)	371222-*****	왕성식당	465,890	진주시 금산면 장시리 1000번지 금산출판골든빌 101-1008	방치
전영지(0058-0001)	전도당구장	전도당구장	96,880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8/2	수취인불명
강동용(0058-0001)	전기전자철물	전기전자철물	58,000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986번지 8/2 (설진강대로 972 :수취인부재)	이사
황영길(0039-0001)	700725-*****	덕천대박마트	9,710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산145-1(사천 사남면 조동길 61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행돌(0010-0001)	할매재첩식당	할매재첩식당	485,970	하동군 금남면 노랑리 537-1 하동할매재첩식당	이사

하동군 공고 제2015-885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불합리한 지방 규제 종합 정비 추진에 따른 지역건설산업분야의 불합리한 조례 개정
- '14년 하반기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으로 발굴된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 협의회는 협의사항으로 제3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군수의 책무를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 (안 제6조제1호)
- 회계관직 명칭 변경 : 경리관 → 재무관 (안 제14조제2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주도록 하고 있고,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군수에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는 삭제 (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880-2504, FAX 880-2509, hsk4130@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붙임】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근거한”을 “따른”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직불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를 “지급보증서를 군 재무관에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1. 제3조에 관한 사항	제6조(기능) 1. <삭제>
제14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생략) ② 군 <u>경리관</u> 은 각종 공사·용역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대금 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하여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 제고에 기여한다.	제14조(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 <u>재무관</u> 은 ----- ----- ----- ----- -----.
제15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u>근거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지불 합의서를 군 경리관에게 제출</u> 토록 하여 공사비 미수급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5조(지역건설산업 보호) ----- ----- ----- ----- ----- <u>따른 하도급</u> <u>대금지급보증서를 군 재무관</u> ----- ----- ----- -----.